

[별표 10]<신설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5·16>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제6조제2항관련)

1.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 별표 2의 사업
8.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창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이 창업개시일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차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10.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